

2019년도 제16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19. 8. 23.(금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대 상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
 - 심의위원 : 박성호, 임진모, 전용준(분과위원장)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안건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3건(안건번호 제2019-99462호~99561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"미스터 기간제"(2019년), "유 퀴즈 온 더 블럭"(2018년) 등과 같은 방송물입니다. 이러한 방송물의 불법 복제 전송이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- B 위원 : 본 건 심의대상물은 드라마 등의 영상저작물을 불법복제한 것으로서,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고 기타 저작권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없으므로,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C 위원 : 99462호부터 99561호까지 100건의 경우 <미스터기간제>, <유 퀴즈 온 더 블럭>, <슈퍼내추럴> 등 최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불법 복제 전송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.

2019년 제16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8. 23.

분과위원장 전용준

위원 임진모

위원 박성호